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6. 4. 27. (수) 10:00

#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이 속 애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16년 4월 18일

○ 회부일자: 2016년 4월 19일

3. 제안이유

충청북도 내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로 정보화 지원의 효율성 증대와 사이버음란물, 게임 중독 등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 (안 제4조)

라. 정보화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함 (안 제5조)

마. 규격 및 구매계획의 사전공지, 매년 규격강화 등의 기술개발 촉진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바. 개인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사. 인터넷통신비 중복지급 예방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인터넷 통신사 변경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 아. 지원컴퓨터의 불법 판매·임대, 게임·인터넷 중독의 상담·치유 서비스의 거부, 기술적 안전조치 거부 등의 지원중단 조건을 규정함 (안 제9조)
- 자. 온라인 동의 의무화를 규정함(안 제10조)
- 차.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 및 사이버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규정함(안 제11조)
- 카. 예산을 투입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적 안전조치에 대한 자산 관리, 지원학생 낙인 부작용 예방 등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2조)
- 타.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 지정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3조)
- 파. 교육정보화지원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4조 ~ 16조)

## 5.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교육기본법」 제17조의4 및 제23조와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충청북도 내 학교·기숙사 등의 학생용 컴퓨터와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에 사이버음란물과 게임중독 등의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기술적 안전 조치를 취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며,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재,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관리와 사이버 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하여 적용하고 있는 망차단방식은 오프라인 유해물을 차단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어 기술적 안전조치가 강화된 방식으로 개선하여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저소득층학생의 교육정보화 지원의 효과를 증대하여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하는 학생이 이용하는 컴퓨터와 도내 학교의 학생용 컴퓨터에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에 대한 책무와 적용대상을 명시 하였고,
- 안 제5조는 교육정보화 지원 및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 예산확보 방안과 행정적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정보화 역기능 예방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는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품선정 절차를 규정하고 유해사이트 차단기능을 매년 강화시키도록 노력하였으며,
- 안 제7조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 하도록 하였고,
- 안 제8조는 인터넷통신사를 언제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9조는 지원 컴퓨터의 불법 판매 임대 방지 및 기술적 안전 조치 거부 등에 대한 온라인 동의절차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관리를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 방법을 설정하였으며,
- 안 제11조는 사이버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안전 조치방법을 제시하였고,
- 안 제12조는 통합관리시스템 자동관리 내용과 저소득층 학생의 낙인 부작용 예방을 위한 노력과 정보수집의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 안 제13조는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 지정을 통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 하도록 노력하고, 단일 과에서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 안 제14조에서 제16조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동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운영사항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음.

- 다만,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기술적 안전 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청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조례 제정으로 충청북도 내 학생들의 정보화 지원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되는 타당한 입법이라 판단 됨.

# 참 고 자 료

## ▣ 타 시·도교육청 동일 조례 제정 현황

- 조례명 :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적용대상 : 저소득층 지원 컴퓨터, 학생용컴퓨터

시·도 교육청	공포일자	시행일자	비 고
대전광역시	2016. 4.15.	2016. 5. 1.	
충청남도	2016. 4.11.	2016. 4.11.	
세종특별자치시	2016. 3.14.	2016. 3.14.	

※ 조례 제정 추진 시·도 : 울산, 경북, 경남 등

## ▣ 타 시·도교육청 유사 조례 제정 현황

- 조례명 :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적용대상 : 저소득층 지원 컴퓨터

시·도 교육청	공포일자	시행일자	비 고
경기도	2016. 1. 4.	2016. 1. 4.	
전라북도	2015.10.12.	2016. 3. 1.	
광주광역시	2015. 12.16.	2016. 3. 1.	

## 관 계 법 령 발 취

### ■ 교육기본법 (법률 13003호 일부개정 2015. 01. 20.)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교육의 정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 초·중등 교육법(법률 12338호 일부개정 2011. 01. 28.)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961호 일부개정 2015. 01. 06.)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① 법 제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입학금 및 수업료
2. 학교급식비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5.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비용

#### ▣ 청소년 보호법(법률 1269호 일부개정 2014. 05. 28.)

제2조(정의)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 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3344호 일부개정 2015. 06. 22.)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 전기통신사업법(법률 12761호 일부개정 2014. 10. 15.)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① 「전과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12844호 타법개정 2014. 11. 19.)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① 정부는 게임 과몰입이나 게임물의 사행성·선정성·폭력성 등(이하 “게임과몰입등“이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
3.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
4.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 ▣ 국가정보화 기본법(법률 11849호 타법개정 2013. 06. 05.)

제30조의6(인터넷중독대응센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2.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조약 제1072호 1991.12.20. 발효)

제17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가.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교육규칙 및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한다.

②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8.6.>

②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0.8.6.>

1. 교육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각종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제5조(실비변상) 위원에게 수당 또는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